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**  **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 3호  《국가세무총국의 <기업자산손실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>에 관한 공고》(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 25호)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, 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.  1. 상업소매기업 재고상품이 산발적 절도, 폐기, 기한만료, 파손, 부패, 쥐에 의한 파손, 고객반환 등 정상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은 재고상품의 정상적 손실로써, 회계과목에 따라 분류, 종합하고 집계된 데이터를 명세서형식으로 기업소득세 납세신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손실상황분석보고를 발급해준다.  2. 상업소매기업의 재고상품이 바람, 화재, 천둥 등 자연재해, 보관, 운송사고, 중대 안건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은 재고상품의 비정상적 손실로써, 특정항목신고방식으로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진행해야 한다.  3. 재고손실(단일항목)이 5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, 어떤 종류의 원인으로 초래되었든 간에 모두 전문신고방식으로 기업소득세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.  4. 본 공고는 2013년도 및 이후 년도 기업의 소득세 납세신고에 적용한다.  특별히 이와 같이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4년 1월 10일 |  | **国家税务总局**  **关于商业零售企业存货损失税前扣除问题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3号  　　根据《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〈企业资产损失所得税税前扣除管理办法〉的公告》（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5号）有关规定，现对商业零售企业存货损失税前扣除问题公告如下：  　　一、商业零售企业存货因零星失窃、报废、废弃、过期、破损、腐败、鼠咬、顾客退换货等正常因素形成的损失，为存货正常损失，准予按会计科目进行归类、汇总，然后再将汇总数据以清单的形式进行企业所得税纳税申报，同时出具损失情况分析报告。  　　二、商业零售企业存货因风、火、雷、震等自然灾害，仓储、运输失事，重大案件等非正常因素形成的损失，为存货非正常损失，应当以专项申报形式进行企业所得税纳税申报。  　　三、存货单笔（单项）损失超过500万元的，无论何种因素形成的，均应以专项申报方式进行企业所得税纳税申报。  　　四、本公告适用于2013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纳税申报。  　　特此公告。  国家税务总局  2014年1月10日 |